

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」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,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, ‘공무원 등’의 뜻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. 부조리 신고기한 폐지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공무원 등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

나. 「구미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원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의 임직원

라. 시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

마.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·동의·추천·제청하는 기관·단체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신고)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호 중 “면탈할”을 “벗어날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공무원 등”이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,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공무원 등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. 「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의 임직원 라. 시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.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·동의·추천·제청하는 기관·단체 중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

2. · 3. (생 략)

제4조(신고기한) 제3조의 규정에
의한 부조리 신고는 「지방공무
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
을 준용하며 징계시효 만료일 3
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고사항의 조사·처리 등)

①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
다)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
 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
 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~ 7. (생 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
 항의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
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11조(보상금의 지급제외)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
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
 실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또는
 행·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

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
임직원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신고) 제3조의 규정에 따른
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
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사항의 조사·처리 등)

①시장-----

 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따른 -----

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보상금의 지급제외) ----

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 ----- 벗어날 -

적으로 신고된 사항 5. ~ 8. (생략)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</u>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시행규칙) ----- --- <u>필요</u>----- -----.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공직자윤리법」

제3조의2(공직유관단체)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,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한국은행
 2. 공기업
 3. 정부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
 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
 5.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·동의·추천·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·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는 기관·단체
-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.

소 관 부 서		감사담당관
입 안 자	담 당 관	손 귀 성
	담 당	최 화 식
	담 당 자	송 홍 경 (480-6073)